

의안번호	2203166
의 퇴 인	권영진의원
회 답 일	2024.11.11
추계번호	24B31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운영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원, 2030년 6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30억원(연평균 6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116조)	6	6	6	6	6	30	6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5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 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u>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이하 이 조에서 “건축비의 가격”으로 한다)</u> 으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u>이 경우 건축비의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음(제2항)</u>	재량·의무규정
2	안 제116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u>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u> 를 두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u>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를 둔다</u> . 다만, 시장·군수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에 <u>지방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항)</u>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55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	• (미첨부3조) 개정안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가격이 현행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조정되고, 건축비 가격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함에 따라 공 공임대주택 가격 단가 상승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할 수 있으나, 정비사업지역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 수를 위한 가격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 임되어 있어, 추계기간 동안 공급되는 국민주택 공급 및 인수에 따른 추가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한계 가 있음
2	안 제116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 (추계)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할 경우 소요비용은 현행 분쟁조정 성격을 갖는 유사위 원회를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기관부담요율 및 공공기관 자산취득비 전망치¹⁾ 적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
칙과 사업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
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3.11.)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1	2.0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2	3.6	3.9	3.8	3.8	3.8	3.8
공공기관기관부담요율(%)	11.124	11.124	11.186	11.250	11.314	11.406	11.500
공공기관자산취득비(천원)	6,740	6,888	7,033	7,188	7,339	7,493	7,65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필요한 위원회 운영비로서, 현재 유사한 성격의 국토교통부 내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 현재 개정안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계획이 부재하므로, 국토교통부내 유사성격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참고함
-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산출한 필요한 경비항목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원하는 ①행정지원기구 운영비용과 ②위원회 심의비 및 ③ 운영경비로 구분하여 합산함
- (행정지원기구 운영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연간 분쟁업무량에 따라 지원기구의 인력규모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사사례의 분쟁조정업무와 비교를 통해 필요 인력을 산출함
 - 유사사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연간 분쟁조정건수는 80회이며, 지원기구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총 23명²⁾
 - 동법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2023년 도시분쟁구역수를 바탕으로 산출할 경우 유사사례의 1/4 수준인 20회(2023년 실적치)로 나타나므로 유사사례 운영비의 1/4 수준의 인력 6인이 필요할 것으로 가정
 - 매년 분쟁구역 수는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가정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인원 구성 및 연봉을 참고하여, 센터장 1인, 분쟁조사 4인, 상담직원 1인 등 총 6인의 지원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인건비에는 연봉과 기관부담금, 사업 첫 해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인건비) 유사사례 직급별 연봉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기관부담요율을 곱하여 기관부담금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이 인건비가 추정됨

2) 이 중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 4명은 사업시행을 담당하는 LH 직원 파견 중

[표 2] 필요인원 및 연봉: 2024년 기준

(단위: 백만원)

	인원	연봉단가	연봉합계
센터장	1	79	104
분쟁조사	4	53	212
상담	1	40	40
합계	6	-	356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기구 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3]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지원기구 운영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봉	383	398	413	428	445	2,066
기관부담금	43	45	47	49	51	234
자산취득비	42	-	-	-	-	42
합계	468	442	459	477	496	2,343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는 위원회 회의운영비로 민간위원에 대해 지급되는 회의심의비용으로 구성됨

-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 위원수는 15인, 분과위원수는 3개 분과 각 3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가정
 - 위원회에서 수당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은 위원장과 공무원 위원 2인 등 총 3인을 제외한 12인으로 가정
 -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별로 각 1인의 공무원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참고할 경우, 수당이 지급되는 민간위원 수는 6명(9명(3개분과×3인)-3명)
- (회의심의비용) 본회의와 분과위원회는 예상되는 분쟁건수 20건을 바탕으로 20회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산됨
 - 회의참석 사례금(안건 검토비 등 포함)은 1건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³⁾

3)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 5., 214쪽)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4] 위원회 회의심의비용 단가: 2024년 기준

구분		인원(명)	횟수(회)	단가(원)	합계(백만원)
분과위	심의비	6	20	300,000	36
본회의	심의비	12	20	300,000	72
합계					108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5] 위원회 심의비용: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회 심의비용	108	108	108	108	108	540

- (운영경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경비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전체 비용의 3.5%로 가정
 - 일반관리비는 회의지원기구, 회의심의 등에 필요한 다과비, 출장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을 포함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행정지원기구 운영비	468	442	459	477	496	2,343
위원회 심의비	108	108	108	108	108	540
일반관리비	20	19	20	20	21	101
합계	596	570	587	606	625	2,984

IV. 부대의견

- 본 보고서는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현행 위원회 운영비용의 업무량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